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
및 운용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7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기금의 설치, 조성, 존속기한(안 제2조부터 제4조)
- 다. 기금의 용도,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라.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8조)
- 마.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바. 위원회의 운영 등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 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3조, 제14조

3)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, 제15조, 제18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
 용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전임

나. 주요 내용

1) 기금의 설치, 조성, 존속기한(안 제2조부터 제4조)

- 기금의 설치(안 제2조)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함

- 기금의 조성(안 제3조)

중전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
 운영관리 조례」에 따라 용자된 기금 621,603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
 등으로 5년간 총 8억 8천 9백만원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

- 존속기한(안 제4조) : 2028년 12월 31일까지

※ 「연도별 재원조달 비용 추계」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세입	기 금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	소계(a)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세출	기 금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	소계(b)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□총 비용(a-b)		-	-	-	-	-	-

- ▶ 보린주택 현황 : 1~6호점, 97세대
- ▶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용자 현황 : 68세대 621,603천원(23.07.25. 기준)
- ▶ 신규 용자 신청 : 207,200천원(20세대 × 평균 입주보증금의 90% 10,360천원)

2) 기금의 용도,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(안 제5조부터 제7조)

- 기금 용도(안 제5조) : 공공임대주택(금천구 “보린주택”) 입주 예정자의
입주보증금 용자
-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: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

3)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: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
기금 운영관리 조례」는 폐지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이 장기간 운용 실적이
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보린주택사업의 지속 추진을
위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함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「주거기본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고
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용자 기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
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향후 5년간 기금 조성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세입 등의
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□ 「주거기본법」

[시행 2022. 6. 8.] [법률 제18561호, 2021. 12. 7., 일부개정]
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23.>

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

제15조(주거비 보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